

「'23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」 민관공동 운영기관 참여 주관기관 모집 공고

기업-스타트업 간 호혜적 협업이 가능한 민관협력의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과 스타트업 주도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『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』 민관공동 운영기관 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18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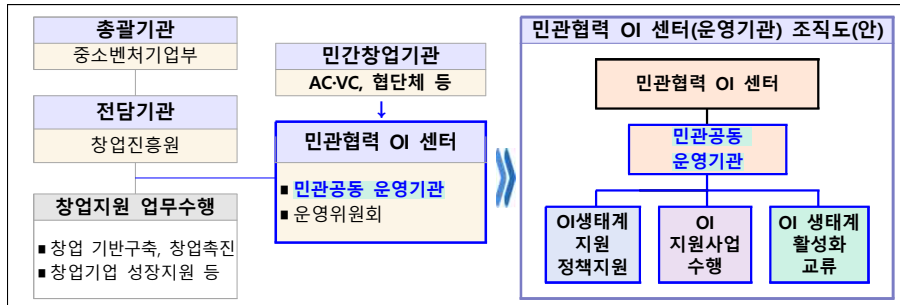
□ 사업목적

-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(OI)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'민간주도 + 정부지원' 형태의 OI 생태계 활성화
- 이에, 정부와 민간창업기관이 **공동의 전담조직** 구성하여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(OI)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'**민관협력 OI 지원사업 운영 등**' 수행

□ 사업내용

- (추진체계) '정부(창업진흥원) + 민간창업기관' 공동 구성의 전담조직 '**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센터 및 민관공동 운영조직**'을 구축

<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(OI) 지원 추진체계 >



- (역할) 정부와 공동 운영조직을 구성하여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을 운영 및 O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역할 수행

-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(前 대-스태 해결사 플랫폼 확대개편) 운영 및 OI 마켓 플랫폼(시스템) 구축 등 사업운영*

- *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(대-중견기업, 공기업 등)을 발굴하고,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, 민관협력 OI 지원사업, OI 생태계 활성화 제반의 역할

민관공동 운영기관 역할

- 정부(창업전담기관)와 공동 운영기관을 구성하여,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운영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
 - ① 오픈이노베이션 수요기업(대-중견, 공기업 등) 발굴 및 스타트업 매칭, 협업 지원
 - ②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마켓 플랫폼(시스템) 구축,
 - ③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관련 정부·산업계 등 교류 및 정책 지원
 - ④ 정부지원금 관리 및 후속관리 등

- (설치) 세종특별자치시 내 운영기관 신규조직 설치 예정('23년 2분기 내)

- * 민관공동 운영기관 참여 선정 주관기관, 정부(창업진흥원) 공동참여 운영기관 설치예정

2. 지원 개요

- 선정 규모 : 1개사

- 지원 내용 : 민관공동 운영기관 운영비 연 6억원 내외 지원

-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일반용역비, 여비, 홍보비 등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운영자금 지원

- 지정 기간 : 2+2년 (평가 결과에 따라 2년씩 연장)

- * '24년도 동 사업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매년 시행되는 실적점검 결과 실적이 미흡한 경우 민관공동 운영기관 참여기관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

3. 신청자격

□ 신청자격

모집 공고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

- (대상) 산업계 및 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 및 지원이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법인단체
- 국내 법인, 단 신청은 법인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

< 신청자격 대상 민간 법인단체 >

기관형태	☐ 창업기획자 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☐ 일반기업(벤처기업, 대·중소·중견기업 등) ☐ 기타 비영리단체 등()
------	--

- (조직)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업무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업무 총괄 1명, 전담인력(실무담당) 3명 이상 배정
-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근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해야 함 (총괄책임자는 비상근 혹은 겸직 가능하나, 전담인력은 겸직 불가)

□ 신청제한

-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

- ①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② 신청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,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
-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
-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'협약 해약' 판정을 받은 경우
-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신청요건

□ 필수 요건 사항

- (전담인력 확보)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3인 이상* 확보(총괄책임자 포함 4인) 및 참여
 - * 총괄책임자 포함 4인 이상을 구성하며, 전담인력 3인 이상은 참여율 100% 수행인력
 - ** '23년 12월까지 민관공동 운영기관 사업비를 통해 총괄책임자 포함 9인 이상 인력 (전담 8인 이상) 확보 필수
- 사업계획서 내 운영기관 참여 인력 구성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
- (대응자금 투입) 참여 주관기관은 총 사업비의 5% 내외(3천만원 이상) 대응자금(현금)으로 투입하여 민관협력 OI 운영기관 구축 지원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3년 1월 18일(수) ~ 2월 24일(금), 16:00까지

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 등이 있더라도 접수기한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·추가제출 불가

※ 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절대 유의

□ 신청방법 :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·접수만 가능(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)

주의 사항
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일전에 시스템 내 입력 및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
- ☞ 온라인 입력 및 서류 제출 완료 후 '최종제출하기' 클릭 필수*, 최종 제출 이후 자료 수정 불가
 - * 「최종제출확인」 페이지 내 입력상태정보가 "제출완료"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,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
- ☞ 필수 구비요건 및 우대사항(가점)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제외 및 불인정
- ☞ 접수 마감일 16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·접수에 각별히 유의 필요
- ☞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5:00까지만 가능

* 온라인 신청 관련 상세사항은 '별첨.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' 참고

□ **제출서류 안내** (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)

No	제출서류(필수 제출서류)
1	주관기관 사업계획서(제안서)
2	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3	주관기관 법인정관
4	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필수 포함)
5	최근 3년간('19~'21년) 재무제표(감사보고서 또는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 확인원)
6	참여 전담인력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(과거 내역 포함),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, 기타 자격사항 증빙자료

6. 신청절차 및 일정

□ **선정평가** : '서면평가 → 현장실사(필요시) → 발표평가'를 통해 선정

※ 평가, 선정 등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조정될 경우 사전에 통지 예정

<참여기관 선정 평가절차(안)>

사업신청·접수	⇒	요건검토 및 서면평가	⇒	현장실사 (필요시)	⇒	대면평가	⇒	최종선정
~'23.2.24 K-스타트업 홈페이지		~'23.3. 전담기관 평가위원회		~'23.3 전담기관 점검반		~'23.3 전담기관 평가위원회		~'23.3.21 전담기관 사업운영위원회

- **(서면평가)**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*를 실시
 - * 평가항목(안): 전담인력 구성계획, 민관공동 운영기관 구축계획, 정책지원 역량, 지원사업 운영 역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
- **(현장실사)** 신청기관 대상으로 전담인력, 운영기관 구축 의지, 지원·관리 역량 등을 현장방문하여 점검 (필요시)
 - * 현장실사 前(대면평가 대상) 준비사항 및 체크리스트 안내 예정
 - 현장실사 결과는 평가에 미반영하되, 대면평가 시 참고로 활용
- **(대면평가)**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전략, 민관협력 운영조직 구축 및 지원에 대한 계획 등 추진내용 발표를 통한 평가 실시*
 - * 주요 평가항목(안) : 민관공동 운영기관 구축 및 지원 의지 및 역량, 전담인력 및 외부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계획 등

- **(최종선정)** 서면평가(40%), 대면평가(60%)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최종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

※ 종합평점 = 서면평가(40%) + 대면평가(60%)

□ 협약체결

-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주관기관은 전담기관과 협약체결 후 정부(창업진흥원)와 공동 운영조직 구축 및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추진

7. 유의사항

- 본 주관기관 공고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민관공동 운영기관의 민간부문 참여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문으로 지원 추진체계를 반드시 참고
-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*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
 - *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신청기관의 장
- 선정된 주관기관은 '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' 및 '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' 등을 준수하여야 함
- 참여 주관기관의 역할은 '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세부 관리기준' 내 운영기관 역할을 준용함
-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지정을 취소함
-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
-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추후 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사업 운영기간 내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

- 사업 선정 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
-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결과 적격기관 없을 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
8. 문의처

□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전담기관 : 창업진흥원 044-410-1715, 1716, 1718

* 신청·접수·시스템·일반 문의 :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
※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거나 변경 세부내용은 「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및 민관 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세부관리기준」을 적용

첨 부 목 록

【첨부 1-1】 주관기관 사업계획서(제안서)

【첨부 1-2】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
참고1

발표평가 안내

□ 주관기관 발표평가 안내

- **(평가일정)** '23. 3월 1~3주차 중 진행 (별도안내)
- **(평가대상)** 요건검토 통과 기관
- **(평가운영)** 대면평가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
 - *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예정
- **(평가시간)** 기관당 25분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0분 이내) 이내 발표평가
 - * 의사결정이 가능한 센터장급, 본부장급 이상인 자의 발표가 원칙이며,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
- **(발표자료)**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준비(PPT)
 - * 사업계획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하거나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
 - ** 사업신청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발표자료 제출을 포함한 일련의 평가과정을 별도 안내

참고2

민관공동 운영기관 참여 주관기관 사업비 기준

□ 민관공동 운영기관 참여 주관기관 사업비 기준

구분	비목	세목	프로그램별 집행 가능 사항	세부 집행기준 및 한도	
				정부지원금	
지원 프로그램 운영비	특화 프로그램 운영비	교육비	공통프로그램, 선택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 관련사항	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	1억원 내외
		멘토링비			
		프로그램 운영비			
		일반운영비			
* 현금 직접지원 불가					
** 전담조직 운영 성격의 예산집행 불가					
전담조직 운영비	인건비	보수, 상용임금, 일용임금	전담인력 인건비 (겸직인력 수당 포함)	전담인력·겸직인력의 인건비 및 수당	* 전체 사업비의 70% 이내 (4억원 내외)
	플랫폼 구축비	외주용역비	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(시스템) 구축을 위한 일반용역비 등 비용	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	(별도편성예정)
	사업운영비 (통합지침 일반수용비)	일반수용비	창업기업 모집·선정을 위한 평가비용, 수당 및 소모품비, 홍보비, 주관기관 회계감사비, 기타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부대비용	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	1억원 내외
		공공요금 및 제세	우편료, 통신요금 등	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	-
		특근매식비	사업 수행을 위한 특근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특근매식비	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	-
		임차료	일시적으로 대관하는 장소, 시설, 장비 및 버스 등의 임차료	배정예산 내 집행 가능	-
		복리후생비	전담인력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, 복지포인트, 건강검진 등	복리후생비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집행	-
	여비	국내여비, 국외여비	전담·겸직인력 국내/외 여비	국외 여비는 전담인력에 한하여 집행	-
	회의비 (업무추진비)	업무추진비	업무협의, 회의 및 간담회비	사업 관련 평가, 회의 및 간담회비 등 (전담조직 운영비의 5% 이내, 1인 당 3만원 이하)	-
* 평가·심사 수당은 1일 최대 50만원 / 자문·멘토링 등 수당은 1인당 1일 최대 30만원 초과 집행이 불가하며, 주관기관 전담조직 소속 외 외부 전문가에게만 집행 가능(시간당 지급 수당은 통합관리 지침 지급규정에 따름)					

※ 정부지원금 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